

■ 법률 칼럼

# 최근 이민 소식

### 1. 10월 영주권 문호

미 국무부/이민국이 발표한 Visa Bulletin에 따르면 10월에도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들이 이민 청원서(I-13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미의 관심 대상인 3순위 취업의 이민의 경우는 드디어 문호가 모두 오픈돼 LC 승인 후 10월부터는 I-140(취업이민 청원서)와 I-485(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것도 프로세싱이 빨라지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2. 복지 혜택 수혜 시 영주권 제한 규정 다시 적용

9월 22일 이민국 웹사이트 복지혜택 수혜 관련 양식인 Form I-944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Form I-944 페이지를 통해 2020년 2월 24일 이후에 접수된 모든 영주권 케이스에 복지 혜택에 따른 영주권 제한 규정 적용을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3.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영주권 수속 빨라져

최근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즉 배우자와 부모 초청 영주권 수속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부모 초청의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 4개월 3주 만에 승인이 난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직계가족에 대한 빠른 수속은 작년 부터 있었던 경향입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을 인터뷰 없이 바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8월 초부터 지문 날인이 다시 시작되면서 부터 빠른 속도로 시민권자 직계 가족의 케이스들이 승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 부모의 경우는 인터뷰를 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케이스인데 작년 2019년 여름 이후부터는 거의 모든 케이스가 인터뷰 없이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국 시스템에 과거에 DACA등을 통해서 지문이 저장된 사람이 본인 영주권을 신청하면 따로 지문 날인이 없이 저장된 지문으로 신원조회를 하고 있는

### 4. 추가서류 요청, 재심 및 항소에 대한 답변 기한 60일 연장 조치 재연장

지난 9월 11일 이민국은 추가서류 요청, 거절에 대한 재심 및 항소 기간을 30일(서면 통보 33일)에서 60일로 연장했던 지난 3월의 조치를 2020년 9월 11일까지 이민국이 발부한 추가서류 요청, 거절 편지(재심/항소 대상)에서 2021년 1월 1일까지 발부된 통지서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발급된 다음 통보서에 대한 답변 기한이 6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Requests for Evidence (추가서류요청)
- Notices of Intent to Deny (거부의향서)
- Notices of Intent to Revoke( 이미 승인해준 케이스 대한 철회 의사 통보서)
- Filing date requirements for Form I-290B, Notice of Appeal or Motion (거절된 케이스에 대한 재심 항소서 제출 기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참고하기 바랍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치과 칼럼

# 구강 위생 이야기

치솔은 약 1,000년전 중국에서 처음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나무 가지 끝을 잘게 으깨거나, 동물을 털을 사용했는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나일론이나 다른 탄력이 있는 화학섬유들을 사용하여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치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입안에는 300여종이 넘는 박테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잔여 음식물이나 타액에 들어있는 단백질들과 어우러져 끈적이는 플라그(치태)를 만들게 됩니다.

2002년 Academy of General Dentistry에 따르면 미국인의 74% 정도가 치은염에서부터 심한 치주염에 이르기까지 일정 정도의 잇몸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학회는 또한 평균 잇솔질 시간이 45초에서 70초 정도로 권장 잇솔질 시간인 2-3분보다 절반도 안되는 시간동안 잇솔질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잇솔질과 관련된 미국치과의사협회 (American Dental Association)의 구강위생에 관한 권장사항에 대해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하루에 최소 한 두번 잇솔질을 하십시오.
-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십시오.
- 치솔은 3-4개월마다 교환하여 사용하십시오.
- 최소한 하루에 한번 치실을 사용하십시오.
-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으십시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한 권장사항입니다. 하지만 잇몸병은 개인마다 그 민감도나 병변의 진행 정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구강 상태를 충분히 이해한 뒤 그에 맞는 구강 위생 관리법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특히 임플란트나 각종

보철 치료를 받으신 경우 이런 보철물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구강 위생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 하셔야 오랜 기간동안 치료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사이에 농담처럼 주고 받는 얘이지만 우리에게 한번쯤 생각을 하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살리고 싶은 치아들만 닦으세요. Only brush the teeth you want to keep.”

여러분은 어떤 치아들을 살리고 싶으세요? 전부 살리고 싶으시면 전부 닦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치아나 잇몸건강을 위한 잇솔질에 신경을 쓰면서 과연 허는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자주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우리 혀에는 입안에 존재하는 박테리아의 약 50%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혀를 닦음으로써 입냄새를 75% 정도 줄일 수 있고, 치태 또한 1/3 가량 줄일 수 있으므로 잇솔질을 하면서 혀도 닦아 줌으로써 보다 청결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사항은 잇솔질 회수나 시간보다 올바른 잇솔질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잇솔질 습관에 따라 잇솔질 방법도 개개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구강 위생 증진을 위한 여러 구강 위생 용품들의 사용도 고려해야하므로 자신의 구강 위생 상태와 잇솔질 방법 등에 대해서 치과 전문의들에게 올바른지 자문을 구하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YON DENTAL GROUP  
Gene H. Park DDS, MS  
한인 치주 임플란트 수술 전문의

Garden Grove Office: (714) 530-1948  
Fullerton Office: (714) 519-3932



www.isemusa.com

#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연체세금 해결
- 법인설립
- 세무감사대행
- 해외자산보고
- 상속, 증여세금보고

방문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4128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Buena Park에서 Fullerton으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